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 가족회사 운영규정

제정 2025년 7월 29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대학교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족회사”라 함은 세종대학교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이하 “핵심연구지원센터”이라 한다)와 연구장비 활용, 산학공동연구, 기술지도 및 자문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기업체”라 함은 법인의 본사, 공장,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연회비 관리) ① 가족회사는 평생회원과 연간회원으로 나뉘며 최초 연회비는 가족회사 신청 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연간회원은 최초 납부 후 1년이 경과한 달의 1일을 연회비 납부 기준일로 정한다.

구 분	기 준	연회비 금액	비 고
가족회사	연간회원	• 연 100만원	
	평생회원	• 500만원	

제4조(가족회사 지원) 가족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회원별 지원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연구장비 공동활용
- 산학공동연구
- 기술지도 및 컨설팅
- 기타

구 분	기 준	할인율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간회원	• 교외 사용요금 15% 할인 적용
	평생회원	• 교외 사용요금 30% 할인 적용

제5조(신청 및 승인) ①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서식 1]에 의거 가족회사 가입신청서를 핵심연구지원센터 센터장에게 신청한다.

② 핵심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은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가족회사 승인 후, 산학협력 협약(이하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6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내용은 제4조 각 호로 하되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유효기간 및 기간연장) ① 가족회사 자격은 협약서 발행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연간회원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통보가 없으면 그 자격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상호 신의 및 비밀보장) ①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가족회사는 상호 간 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

②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가족회사는 상호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성실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단, 비밀사항 제공 시 비밀유지에 관한 범위는 당사자 상호 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핵심연구지원센터 센터장은 가족회사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족회사의 탈퇴 요구 요청이 있을 경우
2. 가족회사가 부도·법정관리·휴업·폐업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3. 가족회사의 대표이사가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경우
4.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환불규정) 유료회원의 연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5. 7.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율곡관 B101호 T.02-3408-3902

<가족회사 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세종대학교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 가족회사 가입과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세종대학교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①고유식별정보 (성명, 핸드폰 번호, E-Mail)
- ②기업현황정보 (전화번호, 주소)

· 제공할 정보의 활용 목적

- ①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②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구장비 공동 활용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을 위한 기초 자료

· 제공할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은 고유식별정보 수집 활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 센터에서 정보를 보유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은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유식별정보의 필수적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의 가족회사 회원 가입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였으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의 자 _____ (인)

※수집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가족회사 협약서

세종대학교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와 _____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는)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 기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산학협력체제(가족회사) 구축으로 기업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인적·물적 교류
나.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과제, 공동연구 수행
다. 기술지도 및 컨설팅
라.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학협력사업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4조(협정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서 발행일로부터 발효하며, 연간회원의 최초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통보가 없으면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양 기관 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을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후의 일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

기업명

센터장 김 선 재 (직인)

대표 (직인)

제 00-000 호

가족회사 회원증

기 업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업체를 세종대학교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의 가족회사 운영규정에 의하여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
가족회사」 회원으로 승인함.

20 년 월 일



**금속유기화합물 첨단소재응용
핵심연구지원센터 센터장**